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91

발의연월일: 2021. 4. 29.

발 의 자:최혜영·강선우·김남국

김민석 · 김승남 · 김승원

김예지 • 김용민 • 김회재

맹성규 · 박성준 · 박완주

백혜련 · 소병철 · 안규백

오영환 • 유건영 • 이상헌

이수진॥ • 이용빈 • 이은주

정청래 · 조응천 · 최종윤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.

최근 「장애인복지법」의 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현행법 상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문제가 된 장애인 관련 시설

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(안 제40조제1항제9호마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제9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	제40조(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
지, 시설의 폐쇄 등) ① 보건복	지, 시설의 폐쇄 등) ①
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	
・군수・구청장은 시설이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	
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, 사업의	
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	
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	
있다.	<u>.</u>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	9
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	
발생한 때	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마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
	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
	<u>죄</u>
<u>마.</u> (생 략)	<u>바.</u> (현행 마목과 같음)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